

[일련번호 : 17]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자율방법대 운영비 집행기준 미준수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법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자율방법대 운영비 지원·정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법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8. 전부개정 2024.12.19.) 제6조(경비 지원 등) 및 2023~2024년 양천구 「자율방법대 운영계획」에 따르면, 17개 동에 구성된 18개 대대자율방법대원에게 복장·장비구입비, 야간 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동주민센터는 전월 근무일지와 지출증빙 등 방법대 제출 정산서를 확인·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며, 정산자료를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양천구 「자율방법대 운영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회계집행을 위해, 운영비 지급에 앞서 체크카드 사용 시각과 순찰 시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월례회의 후 합동순찰을 실시한 경우에만 실비로 인정되고, 이 경우 순찰일지와 회의록을 함께 첨부해야 하고, 순찰일지에는 순찰자 본인과 확인자인

방법대장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월별로 순찰사진 4장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야식비는 매식단가의 1/2 이내에서 자율방법대 실비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간이 영수증 등 신뢰성 없는 증빙서 정산 및 주류·생활용품 등 순찰 및 활동과 무관한 지출을 금지하는 등 회계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집행을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매년 12월 말까지 그 해의 자율방법대 집행잔액(이자 및 캐쉬백 등)을 반납하여 다음 해 예산교부시 전용 통장 잔액이 0원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2~2024년)」 301-06(자율방법대 실비지원)
-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용비
 - 방법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1/2 이내 적용)
 -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감사대상 기간 동안 자율방법대 운영비 정산 시 야식비를 운영기준(매식단가 1/2 이내)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음에도 운영비를 정산처리하였으며, 2023년 자율방법대 운영 계좌를 개인명의 계좌에서 비영리법인단체 명의 계좌로 변경하면서 기존 개인명의 계좌에 3,52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음에도 이를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반납받지 않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에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자율방법대 통장 잔액 부적정 처리 현황 - 세부내역 별도통보

[표2] 자율방법대 운영비 부적정 지출 내역

대상연도	금액	지출내역	부적정 내역
2023년	4,800,000원	야식비(8명)	- 매식단가 1/2 초과(10,000원) 다수 - 주점(*** 호프) 사용 다수
2024년	4,800,000원	야식비(8명)	- 매식단가 1/2 초과(10,000원) 다수 - 주점(*** 호프) 사용 다수 - 순찰일지와 영수증 불일치 (24.7.10. → 24.6.13. 영수증)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